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시행 2018. 10. 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82호, 2018. 10. 5., 일부개정]

【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보상금 산정기준을 AI·구제역 발생 당시 시세에서 최초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로 변경
 -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월)을 반영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18.5.1)에 따른 후속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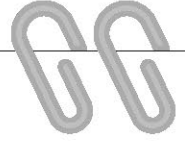
◇ 주요내용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근거 조항 변경
- 제3조제2항제7호 중 “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법 제48조제1항제2호”로 변경
- 보상금 산정기준을 AI·구제역 발생 당시 시세에서 최초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로 변경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별표1(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3호 신설*

【별표 1】

1. 살처분한 가축 (오리 발취)

원종오리·종오리(PS)	
- 병아리	원종오리는 수입면장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종오리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 오리병아리~28주령 미만	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8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245개×병아리가격의1/2×10%)
- 28주령 이상~78주령 미만	28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 단위로 산정
- 78주령 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육용오리	
- 병아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 병아리~41일령	병아리 가격과 42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단위로 산정
- 42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 43일령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 가격 기준 [(kg당 단가×일령)+마리당 당일 사료 가격(농가의 사료구입 단가 적용)]
-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 후 7일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 종란을 제외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산지가격 기준



비고 1. 종계, 산란실용계, 종오리, 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

비고 2. 육용오리 기준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가 있는 기능성 육용오리(무항생제 오리 등)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나. 특수형태(약용) 유향오리(알 포함)의 경우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비고 3. 종오리 및 종란기준

가. 종오리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리(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확인서나 종오리육종 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오리,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 내에 한하여 인정)

나. 종란 : 종계 또는 종오리·종축용 메추리에서 생산된 알(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원종오리장 등에서 생산한 씨알에 한함)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자목 괄호 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구제역·AI 발생시 가격 적용

- 구제역·AI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생산물(우유·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